

第 33 回 達西區議會(臨時會) 議會本會議會議錄 第 2 號(附錄)

大邱廣域市達西區議會事務課

目 次

1. 大邱廣域市達西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39 面
2. 大邱廣域市達西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41 面
3. 大邱廣域市達西區行政區域(洞間境界)調整(案)	45 面
4. 95年度公有財產管理計劃變更(案)	57 面
• 以上4件審查報告書內務委員會	57 面
5. 大邱廣域市達西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2 面
6. 大邱廣域市達西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65 面
7. 朴鎔甲議員質問에對한書面答辯書	67 面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5. 2. 22

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출 자 : 달서구청장
- 나. 제출일자 : 95. 2. 15
- 다. 회부일자 : 95. 2. 15
- 라. 상정일자 : 95. 2. 21

2. 제안설명요지(설명자 : 세무과장 민경철)

가. 제안이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법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

나.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제9조의2, 제184조 및 제188조
- 지방세법 제5장

다. 주요골자

-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사항의 추가(안 제4조)
-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을 지방세법 제5장의 규정에 적용토록하고 구관 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를 삭제(안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 재산세의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를 법 제5장의 규정으로 변경(안 제29조)
- 사업소세의 재산할 납기를 삭제하고 비과세 감면적용자 신고사항을 법 제5장의 규정으로 변경(안 제3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백창기)

본조례는 94. 12. 22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조항의 일부 수정 정리하고 신설된 조항은 삽입하며 불필요한 문항은 삭제하는 등 제반사항을 재정비 하여 세정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제출된 내용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토론요지

조례개정에 관련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원활한 안전심사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사전 충분한 검토과정을 통하여 관련 법조항 등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여 질의답변에 충실을 기하도록 바람.

5. 수정안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반대 없음.

7. 첨부 :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 (안)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제9조”를 “제9조 및 제9조의 2”로 한다.

제17조중 “법 제184조,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을 “법 제184조 및 제5장”으로 하고, 동조, 제5호를 삭제하며, “제6호 및 제7호”를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법 제184조의3제2항제6호에서 “구관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제22조중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을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8조중 「법 제234조의14제2항제6호에서 “구관사업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50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법 제234조의12 내지 제234조의14”를 “법 제5장”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3조중 “법 제245조의2”를 “법 제5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